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18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0가단308572 근저당권말소 등
원 고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 고	1. B
	2. C
변 론 종 결	2020. 10. 15.
판 결 선 고	2020. 11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[redacted]등기소 1995. 8. 1. 접수 제586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
나. 피고 C는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. 8. 18. 접수 제633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18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,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18

부동산의 표시

1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 [redacted] 대 126.6㎡

중 공유자 [redacted] 지분 22분의 4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18

청 구 원 인

1. 구상채권의 발생

가. 원고는 소외 망 D (이하 '망인'이라 함)를 상대로 [redacted]지방법원 2000가소2559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01. 2. 6. 같은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9,730,678원 및 그 중 5,486,351원에 대한 1998. 8. 23.부터 완제일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. (갑1호증의 1 참조)

나. 이후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6638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1. 4. 18.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① 소외 E, F는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,432,669원 및 그 중 1,371,587원에 대하여, ② 소외 G, H, I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810,889원 및 그 중 457,195원에 대하여, ③ 소외 H, I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805,549원 및 그 중 450,980원에 대하여 각 1998. 8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. (갑1호증의 2 참조)

다. 원고의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상원리금과 미수금잔액의 합계는 2020. 3. 12. 기준으로 28,656,750원(= 원리금합계 28,181,950원 + 미수금잔액 474,800원)에 이르고 있습니다. (갑2호증 참조)

라. 한편 망인은 원고 등에 의해서 다수의 법적조치가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18

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함)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,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.

2. 채권자대위권의 행사

가. 망인은,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,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아래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'이라 함)를 각 마쳐주었습니다. (갑3호증 참조)

순번	근저당권자	접수	등기원인	채권최고액	비고
1	피고 B	1995. 8. 1. 제58610호	1995. 7. 31. 설정계약	20,000,000원	을구 1
2	피고 C	1995. 8. 18. 제25196호	2001. 6. 16. 설정계약	15,000,000원	을구 2

나. 그런데 피고 B, C는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가 마쳐진지 2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의 실행에 나서지 아니하였고,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, 따라서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.

다. 한편 피고3내지 5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각 압류명령을 받음으로써 부기등기를 완료하였으나,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3내지 5는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(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18

70041 판결 등 참조)

순번	압류권자	접수	등기원인	처분청	비고
1	피고 3	2013. 3. 14. 제7461호	2013. 3. 11. 압류(세무과-J)	-	을구 1-1
2	피고 4	2013. 4. 29. 제12770호	2013. 4. 25. 압류(징수팀-K)	-	을구 1-2
3	피고 5	2015. 10. 5. 제37600호	2015. 9. 25. 압류(개인납세2과-L)	동대구세무서	을구 1-3

라.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인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, C에게는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, 피고3내지 5에게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가. 이에 원고는,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위 구상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의 말소청구권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습니다.